Heungkuk
흥국생명

보험금 청구서

문서번호 : 06141

【등기우편접수처】 우(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7 (영등포동2가) 2층 흥국생명 사고접수센터
【홈페이지접수】 http://www.heungkuklife.c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사고보험금 청구 → 사고보험금 접수)
【팩스접수】 콜센터를 통한 가상팩스번호 발급 ☎1588-2288 → 0번 → 2번 또는 3번(선택1) 상담사 연결 → 가상팩스번호 발급 요청
※ 홈페이지접수 및 팩스접수는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까지)

①사고자 (보험 대상자)	성 명		e-mail		휴대폰☎	- -
	주 민 번 호	-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기재)		( )	
	주 소	우(□□□□□)				
②수익자 (청구인)	사고자의 관계	☐ 상동(작성생략)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기타 ( )				
	성 명		e-mail		휴대폰☎	- -
	주 민 번 호	-	주 소	우(□□□□□)		

※ ①사고자(보험 대상자)와 ②수익자(보험금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고자와의 관계에서 '상동'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계좌 (수익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상기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보험금청구상의 고객정보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진행사항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내용 (재해, 질병)	청 구 원 인	☐ 질병 ☐ 재해 ☐ 교통재해 ☐ 기타( )
	청 구 사 항	☐ 일반사망 ☐ 재해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 ☐ 실손의료비 ☐ 기타 ( )
	사 고 일 자	20 년 월 일 시 / 사 고 장 소
	사고(발생)경위 또는 주치료(발병)경위	

실손의료비 타사 가입	병 명	※ 실손의료비 합산 영수금액 5만원 이상건 병명 확인서류 필수 구비서류
	○ 타사 실손 가입 여부 : ☐ 예 ☐ 아니오 ○ 보험회사 : ○ 가입건수 : ( )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 해당 여부 : ☐ 예 (해당) ☐ 아니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관련 안내 서비스	○ 보험금 청구 진행과정 (문자메세지) 안내 : ☐ 동의 ☐ 미동의 ※ 진행과정 안내 동의여부 미체크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 됩니다.	
	○ 보험금 심사관련 안내 : ☐ 문자메세지 ☐ 우편 ☐ E-mail ☐ 미신청 ※ 심사관련(내역) 안내 방법 미체크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 됩니다.	
	○ 담당 설계사 문자메세지 안내 : ☐ 동의 ☐ 미동의 ※ 담당 설계사에게 청구진행과정을 안내해 드리며, 미체크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 됩니다.	

※ 심사관련 문자서비스 안내는 스마트(알림톡) 메세지로 안내되며 통신환경(이동통신망접속 등)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10영업일이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기일이 초과될 경우 지연사유에 대해 문자메세지 안내해 드리며, 해당 약관에 의거하여 지연일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험금 현장심사/조사 업무 중 일부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 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 95조 2(설명의무) 제3항, 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담당부서(연락처) 및 예상심사기간(예상 지급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청구 양식 별지의 [법령 준수사항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권 확인 및 사망시 법정수익자 확인 등으로 상세·특정 증명서 제출을 안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수 익 자 (청 구 인)		서 명	(인)

www.heungkuklife.co.kr Call Center 1588-2288

담당 컨설턴트		담당지점		컨설턴트 전화	
접수자 성명	(서 명)	접수지점		전화 / FAX	

○ 보험금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불이익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당사 보험사고 특별조사파트(02-2002-7514)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합니다.

Copyright(C) By Heungkuk Life Insurance All Rights Reserved.

Heungkuk
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회사 귀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신분증진위여부확인**(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등에 조회)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 수납을 위한 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본인의 위임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일 : 보험계약의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단, 만기 등의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보험금 급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래 종료로 보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실명확인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실명여부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주)티시스 : 위탁 콜센터, 전산유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물용역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 **금융거래 업무**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heungkuk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동의함	

20 년 월 일

피보험자	성명 :	서명 :	(인)
수익자	성명 :	서명 :	(인)
	성명 :	서명 :	(인)
친권자 (후견인)	성명 :	서명 :	(인)
	성명 :	서명 :	(인)
청구자 (대리인)	성명 :	서명 :	(인)

Copyright(C) By Heungkuk Life Insurance All Rights Reserved.

Heungkuk 흥국생명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제출방법 : 지점/고객플라자 창구 방문, 우편, 개인FAX, 사이버창구(홈페이지, 모바일)접수 가능합니다. · 1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병원 및 사고사실 확인 서류 등은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심사절차 및 지급결정 안내	· 보험금 청구시 당사(흥국생명)에 요청하신 안내 서비스 신청에 따라 SMS,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접수완료여부와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될 경우, 지연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heungkuklife.co.kr)사이버창구 또는 콜센터(☎1588-2288)을 통하여 접속하시면 계약조회 및 보험금 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不지급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 및 문자서비스, 우편 등으로 안내 드립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서류발급 전 당사 콜센터(☎1588-2288)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3영업일 이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소요됨을 알려 드리며 지급기일(조사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이자계산법에 의한 소정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콜센터 (☎1588-2288)로 가능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2015.03.12.일 이전은 2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재심사 청구	·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 : 당사 홈페이지접속 →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광장 → 고객의 소리(VOC) → 전자민원신청 ※ 우편 및 전화상담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보험금심사팀 (당사 콜센터 ☎1588-2288)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비례분담 적용) 등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손해사정사의 선임 관련 고객의 권리사항 안내	·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 가입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의료심사	·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안내	· 보험계약 및 사고보험금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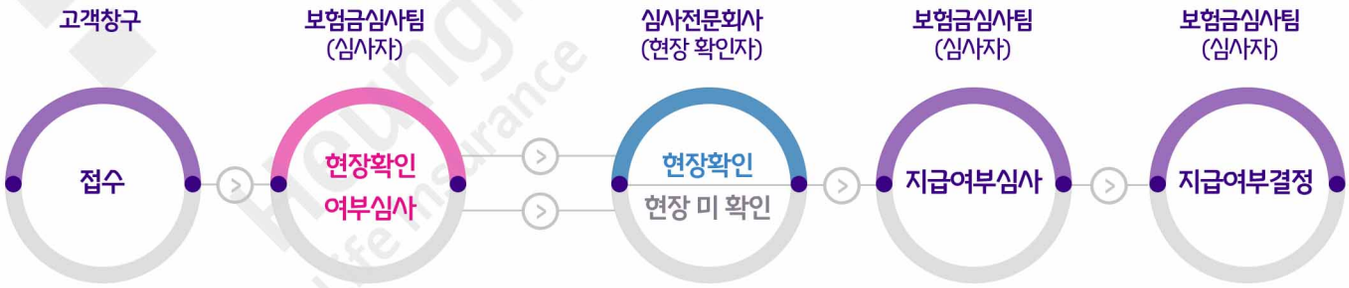

· 보험금 청구관련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SMS로 담당자 연락처가 전송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By Heungkuk Life Insurance All Rights Reserved.

Heungkuk
흥국생명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공통		필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회사양식 회사양식 관공서
		추가	① 수익자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② 재해입증서류[1] ※ 가족관계 확인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청구시 ① 위임장 ②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은행·증권사 서류별 상이 주민센터[2] 주민센터[2] 주민센터[2] 개인양식 주민센터[2] 회사양식
사망	공통	필수 (선택)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③ 망자기준(사망사실 기재) 상세 기본증명서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2]
		추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① 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②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③ 구)제적등본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①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 (회사양식) ②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상속인 전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센터[2] 주민센터[2] 주민센터[2] 회사양식 주민센터[2] 주민센터[2]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입원비	공통	필수 (선택)	※ 진단명(병명, 질병분류코드), 입·퇴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통원비	공통	필수 (선택)	※ 진단명(병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통원확인서 ② 소견서 + 진료차트 ③ 진료확인서 ④ 처방전 (통원일자별 기재) ⑤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후유장애	공통	필수 (선택)	①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1588-2288)를 통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① (일반)진단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추가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③ 사지절단(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 X-RAY결과지 ④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⑤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⑥ 심장·신장·간장·폐 장기이식(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⑦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수술	공통	필수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골절	공통	필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①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재해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치료		필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진단서	 의료기관
		추가	① 재해입증서류[1]	서류별 상이
태아	신생아 입원비	필수 (선택)	①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② 입·퇴원확인서(진단서) - 진단명(병명, 질병분류코드, 인큐베이터 사용기간), 입·퇴원기간 기재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의료기관(주민센터[2]) 의료기관
	유산	필수	① 진단서(유산)	의료기관
	사산	필수	① 사산증명서 ② 진단서(사산)	 의료기관
진단	공통	필수	① 진단서(진단명, 병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의료기관
	암	필수	① 조직검사결과지 (암진단 확인이 가능한 내용 기재)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조직검사 못할 경우 : 대체검사결과지(MRI, CT, 방사선판독지 등) - 암병기에 따른 보장상품의 경우 : 사고증명서(병기확인서-회사양식) 추가	의료기관
	뇌졸중	필수	①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심근경색	필수	①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의료기관
실손의료	입원	필수	① 진단서(진단명, 병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의료기관
		필수 (선택)	※ 진단명(병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기타	- 단, 50만원 이하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갈음	
	통원 (외래·처방)	필수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약제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필수 (선택)	※ 진단명(병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③ 처방전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기타	- 5만원 이하의 경우 병원영수증 -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로 갈음	

1) 재해 입증서류 예시 -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사단장급 의무대대 발급서류,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2)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등에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흥국생명 콜센터(☎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ungkuk Life Insurance
Copyright(C) By Heungkuk Life Insurance All Rights Reserved.